

시간적 관할권

1안 1910.8.29-1945.8.15

출입국관리법(1997.11.18 개정) 제11조 1항 7호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 촉구결의안」(1997.10.23 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1997.12) 273쪽 재수록.

평가: 종전의 시기에 관한 일반적 문제 같이 제기. Greenwood 논문 참조.

2안 제1조(법정의 지위) ‘아시아·태평양전쟁’(Asian and Pacific War, 1941-1945); 제8조(영역적, 시간적 재판관할권) “2. 본법정의 시간적 관할은,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부터 범죄의 영향이 인정되는 현재까지 미치는 것으로 한다.” VAWW-NET Japan 제2차안(1999년 4월 23일 현재)

평가: 아태전쟁 개념의 불명. ‘범죄의 영향이 인정되는 현재’라는 개념은 법정의 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법원의 시간적 관할권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뉘른베르크재판관할권에 있어서나 다른 나라의 전범재판법규를 볼 때 시간적 한계를 과거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음

참조 1930년대 만주사변과 상해침공 이후 위안소 시작

3안 일제강점기 1905년 이후

UN 인권위 49차 회의에 제출된 국제조정협회(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의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256 재수록.

북한입장: 쿠마라스와미 1996 보고서, 순

박원순, 일본 전쟁범죄 처벌 지금도 가능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96(“...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일본의 침략과 점령을 당했던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많은 비인도적 행위들이 범죄로 처단될 수 있는 것이다.”) 주 75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시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의병들의 살해, 민간인에 대한 각종 비인도적 행위, 그리고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심각한 아파르헤이트 정책, 독립운동가들의 살해와 고문·박해 등이 모두 처벌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된다.”)

불처벌과 배상하지 않음으로 인한 오늘의 법적 책임의 문제

참고문헌

ILC Report 1963 Part II, p. 197

